

부산광역시 해운대자이2차 재개발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길 110 [주택관리번호 : 2026000294]
·2028년 7월 임대기간 종료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7.24.(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지역,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2026000294)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4.)**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 **해운대자이 10년공공임대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 단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과거당첨사실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체결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이 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재개발 매입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인터넷·모바일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서류제출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지위는 상실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형(타입)별로 구분하여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1주택 공급기준에 한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계약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관련 별도의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견본주택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팜플렛 또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니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은 인터넷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및 주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동호개방불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의거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8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 가격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유의사항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I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단 지 명	위 치	호 수
해운대자이 2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110 ·총 8개동 813호 중 임대 1개동(108동)	70호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바닥마감재, 가구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자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2. 공급대상

지구 (블록)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임대 운영 호수	공가 세대	잔여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	최고 층수	최초 입주 년월
		공급면적			계약면적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공용							
해운대자이 2차	37	37.9376	16.7242	34.6465	89.3083	70	17	0	40	10	'18.07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임.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0.3025 또는 ㎡÷3.3058)
-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모집 예비자는 대기 중인 예비자의 입주 후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있음.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 이 주택의 임대무기기간은 2028.7월로 만기분양전환 예정일이 2028.8월임에 따라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일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은 불가합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028.07월 임대기간 종료**)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금액단위 : 원)

단지명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해운대자이 2차	37	34,023,000	6,804,600	27,218,400	434,080	+62,000,000	96,023,000	175,740
						-22,000,000	12,023,000	498,240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면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주택명도일 순으로 동·호 배정됨(동호변경 불가)**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를 적용하고 있고, 월임대료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본 임대보증금 감액 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재개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 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해당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며, 융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1.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07.24.(금)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중인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1세대 2인 이상이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만을 인정)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불가 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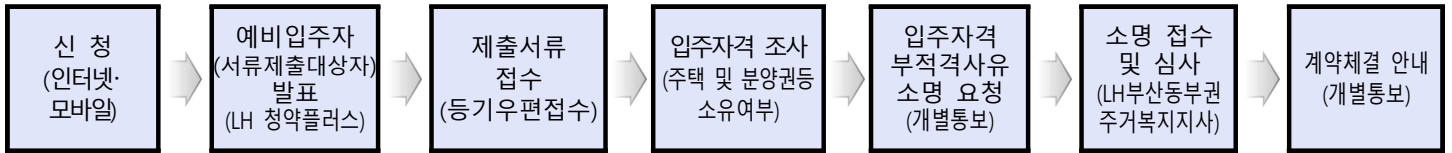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주택법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2. 입주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주택형별 접수기간 내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함

■ 선정절차



Ⅲ

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1. 모집일정

신청 순위	청약신청 (인터넷/모바일)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일시	서류제출장소	계약체결 안내
무순위	2026.08.10(월) 10:00~ 2026.08.11(화) 16:00 LH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2026.08.19(수)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	2026.08.20.(목)~26(수) 10:00 ~ 16:00 등기우편 제출 ※우체국소인일자가 2026.08.26(수) 이내인 경우만 유효합니다.	LH 부산동부권 주거복지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3층)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2026.10월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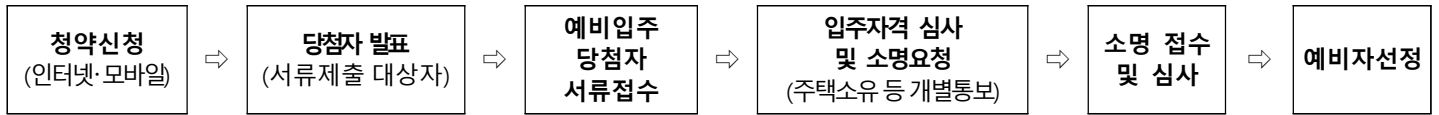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1세대 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16: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접수 당일에만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접수 당일 이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 · 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신청절차



■ 인터넷(PC)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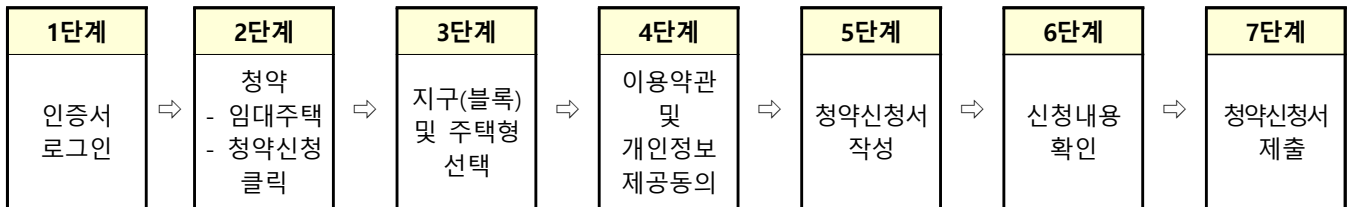
①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의 청약신청하기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10:00~16:00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 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세대원, 지역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당첨자발표(서류제출대상자)일 17시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발표(서류제출대상자)는 별도로 안내드리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제외** 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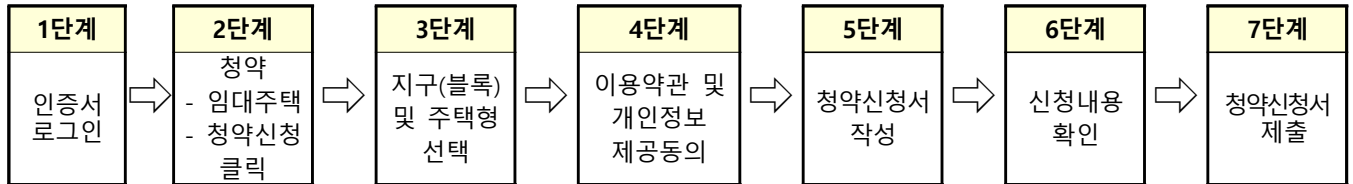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고객센터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16: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신청 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능합니다.

IV

당첨자 발표(서류제출 대상자) 및 서류제출 등 안내

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자격검증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어 계약불가합니다.

당첨자 발표(서류제출 대상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서류제출 장소	계약체결 안내
2026.08.19(수) 17:00이후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	2026.08.20(목)~08.26(수) 10:00 ~ 16:00 등기우편 제출 ※우체국소인일자가 2026.08.26(수)이내인 경우만 유효합니다.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층) (우) 46273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2026.10월예정)

- ※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부산동부권 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2.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026.07.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26.08.20.~2026.08.26)에 예비입주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보낼시 봉투겉면에 "해운대자이 2차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 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미도달, 제출누락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확인 필요)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함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급기관
공통 사항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본인 준비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 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LH공사 (공고문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1통(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모두 포함)	
해당자 추가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분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V

신청시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한국부동산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이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2.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 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와 분리된 경우도 포함)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 시행일(2018.12.11) 이후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청약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 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일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현행6.5%, 변경가능)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VI

유의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된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주택 준공 후 예비입주자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주소, 핸드폰번호)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3층)로 서면 또는 유선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변경방법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 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호개방 불가)
-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LH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며, 중복으로 입주 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기존 입주자의 해약·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장소 안내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장소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 서류제출 장소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BIP)빌딩 3층(구서동 84-16)

■ 지하철1호선 구서역하차

2번 출구에서 약 100M (도보1분)

■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청약신청(인터넷/모바일)** 및 **서류제출(등기)**을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불가로 대중교통이용 바랍니다.

임대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09:00~18:00)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2026.07.24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신청자명 :	핸드폰번호 :
단 지 명 :	접수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계약자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권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 .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